

#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결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5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3일

발 의 자 : 김희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최웅식, 홍성룡, 전석기, 정진술,  
문장길, 김평남, 이영실, 김화숙,  
이병도, 박순규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「하천법 시행령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정비함(안 제5조제2항)

○ 연 6퍼센트 →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

나. 점용료등의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8조)

○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가 폐지됨에 따라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부터 제32조를 따름

다. 징수교부금을 정비함(안 제13조)

○ 변상금 : 100분의 40 → 100분의 50

라. 「하천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

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(안 별표1)

마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등 변경사항 반영함(안 제12조 및 별표1, 비교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천법 시행령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 
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정부조직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 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.”를 “남은 금액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.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부터 제32조”로 한다.

제10조 조문의 제목을 “점용료등의 반환”으로 하고,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호 중 “100분의 4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점용료 등”을 “점용료등”으로 하고, 표 구분란 중 10.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란의 다.의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환경부장관”으로 하며, 비고 중 1.의 “점용료 등”을 “점용료등”으로, “2천원”을 “5천원”으로 하고, 2.의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점용료등의 분할납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<u>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.</u> 다만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8조(가산금 및 독촉)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를 따른다.</p> <p>제10조(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3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5조(점용료등의 분할납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남은 금액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가산금 및 독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부터 제32조를 따른다.</p> <p>제10조(점용료등의 반환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 삭 제 &gt;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제12조(과태료) ① 지방하천 및 영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권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징수교부금) 서울특별시는 구청장이 점용료등을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변상금의 경우 <u>100분의 40</u></p> <p>[별표1] 점용료 등 산정기준(제2조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산 정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~9.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10.하천수 사용료</td> <td>가.~나. (생략) 다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(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) :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 제2항에 따라 <u>국토교통부장관</u>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. 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1. 1건의 <u>점용료</u> 등이 <u>2천원</u>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구 분	산 정 기 준	1.~9.	(생략)	10.하천수 사용료	가.~나. (생략) 다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(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) :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 제2항에 따라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. (생략)	<p>제1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<u>국토교통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징수교부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100분의 50</u></p> <p>[별표1] <u>점용료등</u> 산정기준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산 정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~9.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10.하천수 사용료</td> <td>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----- ----- -----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1. 1건의 <u>점용료등</u>이 <u>5천원</u> ----- -----.</p>	구 분	산 정 기 준	1.~9.	(현행과 같음)	10.하천수 사용료	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
구 분	산 정 기 준												
1.~9.	(생략)												
10.하천수 사용료	가.~나. (생략) 다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(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) :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 제2항에 따라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. (생략)												
구 분	산 정 기 준												
1.~9.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10.하천수 사용료	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
<p>2. 토지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<u>국토해양부장관</u>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 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토지가격 비준표)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</p>	<p>2.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3.~7. (생략)</p>	<p>3.~7.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(점용료등의 분할납부) 제2항, 제8조(가산금 및 독촉), 제13조(징수교부금), 제10조(점용료등의 반환) 및 [별표1]을 개정함에 따라, 서울시 세외수입 감소로 비용 발생
  - 다만, 제5조 분할납부 이자율의 경우, 이미 개정안대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,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음
  - \* '19년 기준 분할납부를 시행한 자치구는 12개로 노원구를 제외한 11개 자치구는 이미 개정안대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적용중이며, 노원구는 분할납부 이자수입분이 25,800원에 불과한바,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
  - 한편 제8조 증가산금의 경우, 체납 국세의 12/1,000에서 체납 지방세의 75/10,000으로 변경됨으로써 세외수입이 감소될 수 있겠으나 적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되어 감소분이 상쇄될 수 있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불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≍ 93,355천원
  - 총 비용 : 93,355천원(연평균 18,667천원)

(단위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	합계
구분	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(안 제13조)	△18,650	△18,650	△18,650	△18,650	△18,650	△93,250
	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(별표1)	△17	△17	△17	△17	△17	△85
	소계(a)	△18,667	△18,667	△18,667	△18,667	△18,667	△93,335
세출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18,667	18,667	18,667	18,667	18,667	93,335

\* 물가상승률 미만영, 천 원 미만 반올림

○ 전제

-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은 ‘19년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교부 내역을 적용하고 현황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은 최근 5년간( ‘15년~ ‘19년) 5천 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평균 부과액을 적용하고 현황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

다. 세부추계내역

○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≍ 93,250천원

= 연간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(18,649,902원) × 5년

▶ 연간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≍ 18,649,902원

= {(하천변상금-5천원 미만 변상금) × 개정후 자치구 교부율} - (하천변상금 × 개정전 자치구 교부율)

= {(186,658,120원 - 31,820원) × 50%} - (186,658,120원 × 40%)

\* 제13조(징수교부금) 중 변상금을 40/100에서 50/100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, 변상금 10%의 서울시 세외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
\* ‘19년,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부과액 31,820원 적용

○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≍ 85천원

= 연간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(16,634원) × 5년



- ▶ 연간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≙ 16,634원
  - = 최근 5년간(' 15년~19년)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평균 부과액×(1-자치구 교부율)
  - = 33,268원×50%
- \* 제10조 및 [별표1]의 소액불징수 금액을 2천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함에 따라,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점용료등을 징수하지 않아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\* 최근 5년간(' 15년~19년)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평균 부과액 33,268원 적용 (출처: '19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)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정책조사팀장	여차민
분 석 관	이수아
	☎ 02-2180-7944
	e-mail : sua8873@seoul.go.kr